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44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강득구 · 채현일 · 김영호
이학영 · 김기표 · 이병진
조계원 · 권칠승 · 양문석
민병덕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산림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연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

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76조).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불이 타인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 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단서 신설></u>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u><단서 신 설></u>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 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u><단서 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 ----- ----- ----- 다만, 타인 소유의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산림에 불 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 ----- ----- ----- 다만,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 을 지른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 ----- ----- ----- 다만, 불이 타인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까 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